

등록번호	세무2과-24910
등록일자	2015.9.4.
결재일자	2015.9.4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주무관	세외수입팀장	세무2과장	기획재정국장
이남경	신창규	박기석	09/04 박진석
협 조			



-2015년 세외수입 징수목표 초과 달성을 위한 -
세외수입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강화 계획



**기획재정국
세무2과**

- 2015년 세외수입 징수목표 초과 달성을 위한 -
세외수입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강화 계획

지난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 강구하여 납세의무자간의 형평성과 재정확충 및 건전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I 추진근거

- 서울시 세무과-19461('15.8.25) 세외수입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 강화 계획
- 세무2과-9714('2015.4.10) 2015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계획

II 세외수입 체납 현황

- 체납액 현황(지난 연도 기준)

(단위 : 백만원,%)

구 분	징수결정액	수납액	결손액	체납액	비 고
합 계	35,790	3,018	119	32,653	7월말기준
구 일반회계	31,568	2,814	119	28,635	
시 일반회계	4,222	204	-	4,018	

- '15년 7월말 세외수입 지난년도 체납징수 실적

(단위 : 백만원,%)

구 분	예산액	징수액	진도율	비 고
2015년	3,471	2,814	81.1%	
2014년	4,902	2,050	41%	

- '15년 7월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징수 실적은 2,814백만원으로 예산액(3,471백만원) 대비 진도율은 **81.1%임**

□ 주요 세외수입 체납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징수결정액	수납액	결손액	체 납 액	점유율
합 계	35,790	3,018	119	32,653	100%
도로사용료 · 변상금	11,308	670	-	10,638	32.6%
건축이행강제금	11,926	1,973	-	9,953	30.5%
자동차관리법 관련 과태료	8,798	223	60	8,515	26.1%
기 타	3,758	152	59	3,547	10.8%

※ 주요체납은 가로환경과의 도로사용료·변상금, 주택과의 건축이행강제금, 교통행정과의 자동차관리법 관련 검사 및 의무보험 과태료 등임

□ 체납액 발생 주요 원인

- 경기침체에 따른 납부능력 저하 및 납부의식 부족
 - 납부자의 사업부진, 무재산, 폐업·부도, 행방불명 등 납부능력 저하
 - 조세채권에 비해 체납처분의 근거가 미약함에 따라 납부의식 부족
- 다양한 징수체계 및 체납징수 수단 미약
 - 세외수입 관련 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징수절차 관련 규정이 없고, 세법 준용범위가 불명확하여 법적용에 혼란
 - 지방세에 준하는 다양한 유인 조치와 **강력한 행정제재 수단 부재**

《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수단 비교 》

구 분	지 방 세	세 외 수 입
금 융 재 산 조 회	조세체납자로 한정(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)	세외수입 체납자 제외
압 류 효 력 범 위	압류 이후 발생하는 체납까지 유효(국세징수법 제47조)	압류당시 체납만 유효
경 매 · 공 매 배 분 순 위	후순위 압류를 하여도 법정 기일에 따라 교부청구시 선 순위 인정	선순위 압류 불인정, 조세 채권 우선 배당 후 일반채 권과 안분 배당

Ⅲ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강화 대책

□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

- 1차 추진기간 : 9. 1 ~ 9. 30까지(1개월)
- 2차 추진기간 : 11.1 ~ 12.31까지(2개월)

□ 「세외수입 지난년도 체납액 정리단」 구성·운영

세 외 수 입 지 난 년 도 체 납 액 정 리 단



■ 구성원 : 세외수입팀 팀장 1명, 체납담당 주무관 5명

■ 지난년도 세외수입 체납 관리

- 체납징수대책 수립·시행
- 고액체납자 배시 후 특별 관리
- 압류 등 체납처분 진행 및 연도말 체납 일제정리 실시

□ 체납액 징수강화 목표액 설정

(단위 : 백만원)

징수 목표액			비고
합계	시일반회계	구일반회계	
1,805	801	1,004	

※ 시일반회계 징수 목표액 : 801백만원(시 배시)/ 체납액 4,007백만원의 20%(6월말기준)

※ 구일반회계 징수 목표액 : 1,004백만원(예산목표 3,471백만원 대비 110%, 3,818백만원)

□ 중점 추진내용

- 자체계획을 수립 및 징수목표액 설정 운영
- 체납자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 실시
- 고액·상습체납자 집중관리
- 지난년도 세외수입 체납자 대상으로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 등

□ 체납자 재산조회 및 주소 현행화로 신속한 채권 확보

- 재산조회 및 주소 현행화 : 매달 첫째주
 - 부동산 : 전국토지전산망을 보유하고 있는 토지관리과에 체납자 소유 부동산 내역 조회 의뢰
 - 자동차 : 자동차등록전산망을 이용 체납자 자동차 소유내역 조회
 - 주소조회 : 주민등록전산망을 가지고 있는 자치행정과에 주소 조회 의뢰
- 체납고지서의 정확한 주소지 송달 및 현지 방문에 활용

□ 법률에 근거한 행정제재수단 적극 활용

- 「지방세외수입법」에 따른 세외수입금의 제재 수단

- 과세자료 활용 :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34조의3에 따른 과세자료(급여 채권 및 재산세·취득세 부과자료 등) 이용
- 신용정보 제공 : 1년 경과하거나 1년 이내에 3회이상 체납이 각각 500만원 이상 체납자,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전국은행연합회에 체납자료 등을 제공
-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 과태료의 제재 수단
 - 관허사업제한 : 해당사업과 관련된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,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
 - 체납자료 제공 : 1년 경과 또는 1년에 3회 이상 각각 500만원 이상 이상 체납자의 체납자료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
 - 감치(監置) : 1년이 경과한 체납이 3회 이상이고, 총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 체납자 중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체납한 자

□ 결손처분 자료 일제정비

- 적극적 결손처분으로 행정력 낭비 방지
 - 무재산 또는 환가가치 없는 재산 등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액의 압류해제 및 결손처분
 - 체납액 대비 압류재산 가액이 소액일 경우 부분결손 활용
소멸시효가 지난 체납액은 시효결손처분 확행
- 무재산 등의 결손자료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
 - 결손처분된 세외수입의 정기적(년 2회) 재산조회 실시, 신규 재산 발견 시 즉시 결손처분 취소.징수

□ 체납자 오류정보 일제 정비

- 주민등록번호 오류 등 체납자 오류정보 정비
 - 체납자 정보(주민등록번호, 사업자번호, 성명 등)에 오류가 있을경우 주소지 및 채권조회 불가로 징수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 하여 체납액 누증의 원인이 되고 있음
 - 서울시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에서 체납자정보 오류자료를 추출, 관련 공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오류자료 정비
- 체납자 오류정보의 정비가 불가능한 체납액은 결손처분 확행

□ 전국 합동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

- 일 자 : '15. 11. 10(화)
- 영치대상 : 「질서위반행위 규제법」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
 -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제48조 제3항 제1호에 따른과태료(의무보험 과태료 등)
 - 「도로교통법」제16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(가시광선 투과율 과태료 등)
 - 「자동차관리법」제84조 제2항 제1호, 제2호부터 제13호까지, 제13호의2, 제18호 및 제19호와 같은 조 제3항 제1호.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(자동차등록 과태료 등)
- 영치조건 : 「질서위반행위 규제법」시행령 제14조 제2항 각호의 요건 모두 충족
 -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을 넘어 체납하였을 것
 -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합계액이 30만원(가산금 포함) 이상일 것

-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해당 과태료를 체납한 본인 소유일 것
- 영치방법 : 영치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경찰청 등 유관기관 합동

IV 행정 사항

□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강화 계획 및 징수실적 제출

- 자체 수립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강화 계획 제출 : '15.9.10일한
- 세외수입 지난년도 체납액 정리실적 제출 : 매 익월 10일 한

□ 전국 합동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 실적 제출 : '15.11.11일 한

- 별 첨** 1. 세외수입 지난년도 부서별 체납현황 1부.
2. 세외수입 지난년도 체납액 정리 실적 제출 1부. 끝.